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64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호(2006.01.12.)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13호(2026.06.04.)로 「도시관리계획(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된 영등포구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6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1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I.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아파트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여의도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337,378.7	—	337,378.7	건고131 (1976.8.21.)	

2.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계(㎡)	1주구(㎡)	2주구(㎡)	3주구(㎡) (대상지)	4주구(㎡)
기정	337,378.7	74,204.9	22,645.0	146,437.8	94,091.0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337,378.70	100.0	337,378.70	100.0	-
주거 용지	소 계	298,443.50	88.5	296,666.56	87.9	감) 1,776.94
	주택용지	298,443.50	88.5	296,666.56	87.9	감) 1,776.94
중심 시설 용지	소 계	7,508.10	2.2	7,508.10	2.2	-
	주구중심	7,221.80	2.1	7,221.80	2.1	-
	분구중심	286.30	0.1	286.30	0.1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31,427.10	9.3	33,204.04	9.9	증) 1,776.94
	도로	6,059.80	1.8	9,696.74	2.9	증) 3,636.94
	공원	25,367.30	7.5	23,507.30	7.0	감) 1,860.00
기타	소 계	-	-	-	-	-
	공공이용시설	-	-	-	-	-

※ 기정 : 목화아파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영등포구고시 제2026-66호, 2026.05.07.) 반영

※ 삼익아파트, 은하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 합산면적 반영

1)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46,437.80	100.0	146,437.80	100.0	-
주거용지	소 계	124,228.70	84.8	122,451.76	83.6	감) 1,776.94
	주택용지	124,228.70	84.8	122,451.76	83.6	감) 1,776.94
중심시설 용지	소 계	-	-	-	-	-
	주구중심	-	-	-	-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22,209.10	15.2	23,986.04	16.4	증) 1,776.94
	도로용지	2,846.80	2.0	6,483.74	4.4	증) 3,636.94
	공원용지	19,362.30	13.2	17,502.30	12.0	감) 1,860.00
기타	소 계	-	-	-	-	-
	공공이용시설	-	-	-	-	-

※ 삼익아파트, 은하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 합산면적 반영

4) 4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337,378.70	—	337,378.70	100.0	삼익, 은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5,200.70	—	5,200.70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375.70	감) 33,493.06	174,882.64	51.8	
준주거지역	88,958.70	—	88,958.70	26.4	
일반상업지역	34,558.90	증) 33,493.06	68,051.96	20.2	
자연녹지지역	284.70	—	284.70	0.1	

※ 기정 : 목화아파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영등포구고시 제2026-66호, 2026.05.07.) 반영

※ 삼익아파트, 은하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 합산면적 반영

2)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30	35~38	주간선도로	987	여의동로	의사당대로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1	30	35~41	주간선도로	987	여의동로	의사당대로	일반도로	—	—	일부확폭
기정	대로	3	31	25~45	주간선도로	1,380	여의도 남단	여의도 북단	일반도로	—	건고143 (1970.3.26.)	—
기정	대로	3	100	25~27	주간선도로	590	국제금융로	여의동로	일반도로	—	건고143 (1970.3.26.)	—
기정	중로	1	132	20~30	보조간선도로	6,873	여의도 남단	여의도 북단	일반도로	—	—	특수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	20 (11.5)	보조간선도로	272 (139)	63로	여의대방로	일반도로	—	서고2025-80 (2025.2.13.)	—
변경	중로	1	—	20 (11.5)	보조간선도로	272 (139)	63로	여의대방로	일반도로	—	서고2025-80 (2025.2.13.)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	10~14	특수도로	44	여의도동 50	여의도동 86-5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2025-80 (2025.2.13.)	도로하천과 중복결정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2)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3)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4)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	소공원	여의도동 30-3 일원	940.0	-	940.0	서고2006-21 (2006.1.12.)	-
기정	②	-	소공원	여의도동 40 일원	680.0	-	680.0	서고2006-21 (2006.1.12.)	-
기정	③	-	소공원	여의도동 40-4 일원	470.0	-	470.0	서고2006-21 (2006.1.12.)	-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여의도동 50 일원	17,502.3	-	17,502.3	서고2025-80 (2025.2.13.)	-
기정	⑥	-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37 일원	1,760.0	-	1,760.0	서고2006-21 (2006.1.12.)	-
기정	⑦	-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28 일원	2,155.0	-	2,155.0	서고2006-21 (2006.1.12.)	-
폐지	⑤	-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1, 52 일원	1,860.0 (930.0)	감) 1,860.0 (930.0)	-	서고2006-21 (2006.1.12.)	-
신설	⑫	-	소공원	여의도동 51, 52 일원	-	증) 3,000.0 (1,500.0)	3,000.0 (1,500.0)	-	임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소공원⑫(3,000㎡)은 삼익아파트 1,500㎡, 은하아파트 1,500㎡에 해당하는 면적임

※ 3,000㎡(1,500㎡)는 수평투영면적임

■ 임체적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⑫	소공원	여의도동 51, 52 일원	길이(m)	-	증) 85(42.5)	85(42.5)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임체적 결정도 참조
				폭(m)	-	증) 35(35.0)	35(35.0)		
				높이(m) (해수면기준)	-	증) E.L 11.0 이상	E.L 11.0 이상		
				수평투영면적(㎡)	-	증) 3,000(1,500)	3,000(1,500)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 임체공원은 원활한 식물 생육을 위해 토심을 최소 2m 이상, 토심과 별도로 방수·방근층을 조성해야 한다.

※ 구분지상권 설정은 지상부~지하부 2m 범위로 정하고 임체공원 사용권은 행정청(관리청)에 무상귀속되며, 도시계획시설(공원) 폐지 시 까지 구분지상권 유지한다.

5)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6)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7)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8)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 시설	액티브 시니어 센터	여의도동 51	—	증) 2,296.5	2,296.5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2,296.5㎡는 수평투영면적임

※ 삼익아파트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사회복지 시설	액티브 시니어 센터	여의도동 51	층	—	증)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2,296.5	2,296.5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은 영등포구로 귀속되며, 영등포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9)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건축규제 사항 : 변경없음

바. 중심시설계획 : 변경없음

사. 기타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565.0	—	18,565.0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65.0	감) 16,917.0	1,648.0	8.9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6,917.0	16,917.0	91.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6,9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 및 주변 아파트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하여 계획

2.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여의도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337,378.7	—	337,378.7	건고131 (1976.8.21.)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①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기정)도

②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도면 별첨

III.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18,565.0	—	18,565.0	—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565.0	—	18,565.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930.0	증) 718.0	1,648.0	8.9	—
	도로	—	증) 1,648.0	1,648.0	8.9	—
	공원	930.0	감) 930.0	(1,500.0)	—	(임체결정)
획지		17,635.0	감) 718.0	16,917.0	91.1	—

나. 도시군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	20 (11.5)	보조간선 도로	272 (139)	63로	여의대방로	일반도로	서고2025-80 (2025.2.13.)	선형 변경
변경	중로	1	—	20 (11.5)	보조간선 도로	272 (139)	63로	여의대방로	일반도로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	중로 1-	• 도로 선형 변경 - 각각부 개설	• 각각부 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⑤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1, 52	1,860.0 (930.0)	감) 1,860.0 (930.0)	—	서고2006-21 (2006.1.12.)	—
신설	⑫	공원	소공원	여의도동 51, 52	—	증) 3,000.0 (1,500.0)	3,000.0 (1,500.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소공원⑫(3,000㎡)은 삼익아파트 1,500㎡, 은하아파트 1,500㎡에 해당하는 면적임

※ 3,000㎡(1,500㎡)는 수평투영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⑫	소공원	여의도동 51, 52	길이(m)	—	증) 85(42.5)	85(42.5)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폭(m)	—	증) 35(35.0)	35(35.0)		
				높이(m) (해수면기준)	—	증) E.L 11.0 이상	E.L 11.0 이상		
				수평투영면적(㎡)	—	증) 3,000(1,500)	3,000(1,500)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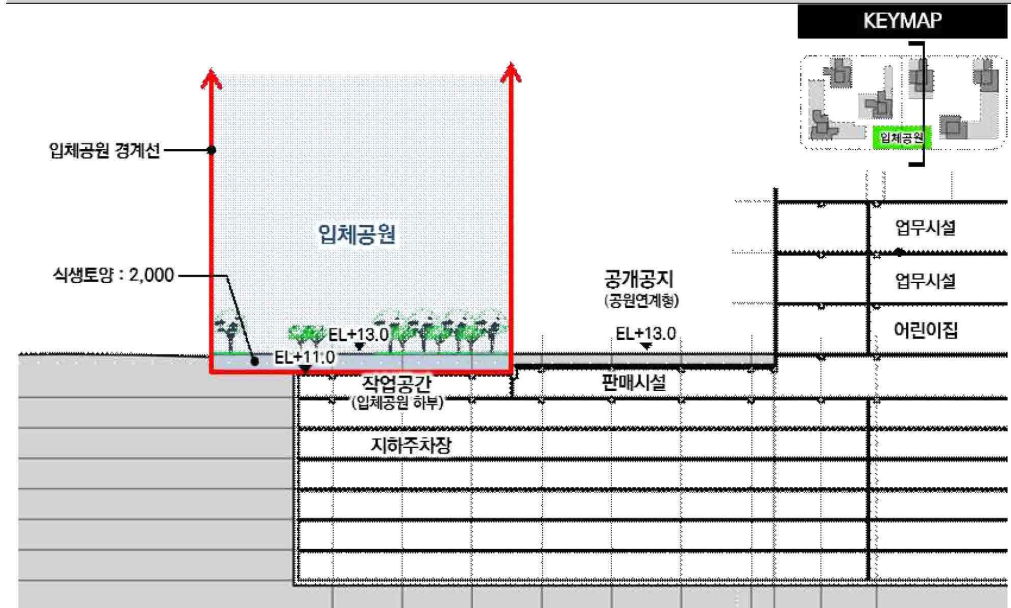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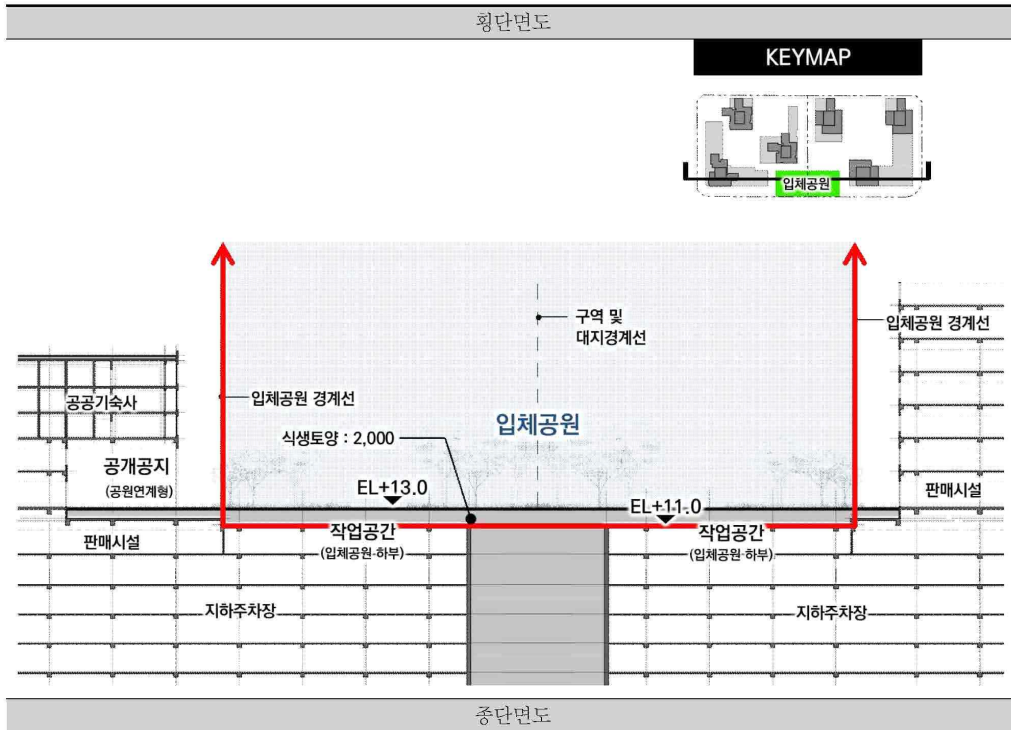
※ 입체공원은 원활한 식물 생육을 위해 토심을 최소 2m 이상, 토심과 별도로 방수·방근층을 조성해야 한다.

※ 구분지상권 설정은 지상부~지하부 2m 범위로 정하고 입체공원 사용권은 행정청(관리청)에 무상귀속되며, 도시계획시설(공원) 폐지 시 까지 구분지상권 유지한다.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공원 폐지 - 1,860.0㎡ → - (감) 1,8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의 복합적 활용계획 및 공원 이용자 특성변화 등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어린이공원 폐지
⑫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길이 : 85m (42.5m) - 폭 : 35m (35m) - 높이(해수면기준) : E.L 11.0m 이상 - 수평투영면적 : 3,000㎡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의 입지 여건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소공원으로 결정하고, 공원의 복합적 활용계획을 위해 입체적 결정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면적(㎡)		비 고
			법정기준	계획(안)	
신설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330.0	340.00	주택조례에 따른 총량기준 672세대 × 2.5㎡×1.25 = 2,100㎡ 이상 4,483.54㎡ 계획
		어린이집	330.0	399.94	
		작은도서관	158.0	162.00	
		다함께돌봄센터	66.0	120.00	
		어린이놀이터	872.0	1,011.60	
		키즈카페	—	450.00	
	무대 시설	기타주민공동시설	—	2,000.00	
		관리사무소	41.1	41.30	
		경비실	—	41.00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8,565.0	획지1	16,917.0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4	—	—	4	—	공동주택

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최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변경	여의도 은하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8,565.0	획지1	16,917.0	여의도동 52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0% 이하	350% 이하	518% 이하	200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의 건립규모 및 비율<ul style="list-style-type: none">-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60.9%										
		구분		총 세대수(세대)		임대(세대)		분양(세대)		비율(%)		
		60㎡ 이하		200		85		115		29.8		
		60㎡ ~ 85㎡ 이하		209		16		193		31.1		
		85㎡ 초과		263		-		263		39.1		
		합계		672		101		571		100.0		
심의완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량 : 120% 이내)•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금융로 연결부 : 6m- 63로 연결부 : 5m- 이면도로 및 입체공원 연결부 : 3m• 벽면한계선 : 15층 이상 건축물 벽면 건축한계선에서 3m 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보행통로 : 삼익아파트 연결부 폭 3.2m 조성• 국제금융로 및 63로변 가로활성화용도 배치• 간선도로변 및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동시·동일하게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함

※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용적률 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	구역면적	대지면적 (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순부담 제외면적	
			소계	토지 및 지분 (①+②)	건축물 (환산부지) (③)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확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18,565.0	16,917.0	6,088.15	4,590.21	1,497.94	-	-
공공시설 제공면적	전체	• 순부담면적 : 6,088.15㎡(32.8%)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① 1,648.0㎡ + ② 2,942.21㎡ + ③ 1,497.94㎡) - 0㎡ - 0㎡ = 6,088.15㎡					
	토지	① 토지 기부채납 면적 : (도로) 1,648.0㎡					
	토지 지분	② 토지지분 기부채납 면적 : 2,942.21㎡ • 공공임대주택 제공면적 : 14,003.94㎡ (지상 : 8,633.18㎡, 지하 : 5,370.76㎡) : 토지지분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전체연면적) = 16,917.0 × 14,003.94 ÷ 145,631.86 = 1,626.73㎡ • 공공기숙사 제공면적 : 7,324.50㎡ (지상 : 5,674.50㎡, 지하 : 1,650.00㎡) : 토지지분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전체연면적) = 16,917.0 × 7,324.50 ÷ 145,631.86 = 850.83㎡ • 산모건강증진센터 제공면적 : 4,000.00㎡ (지상 : 2,500.00㎡, 지하 : 1,500.00㎡) : 토지지분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전체연면적) = 16,917.0 × 4,000.00 ÷ 145,631.86 = 464.65㎡					
	건축물	③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1,497.94㎡ • 입체공원 환산부지 : 41.41㎡ (입체공원 조성면적 : 1,500㎡) =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설계·감리비 포함) = 1,500㎡ × 909,091원/㎡ ^{주1} + 설계비(69,570,248원) + 감리비(16,276,860원) = 1,449,483,471원 ^{주7} : ㉡ = 35,000,000원 ^{주6} • 공공임대주택 환산부지 : 674.99㎡ =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 = (8,633.18㎡(지상) × 2,082,727원/㎡ ^{주2}) + (5,370.76㎡(지하) × 1,050,909원/㎡ ^{주3}) = 23,624,737,102원 : ㉡ = 35,000,000원 ^{주6} • 공공기숙사 환산부지 : 402.09㎡ =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 = (5,674.50㎡(지상) × 2,174,545원/㎡ ^{주4}) + (1,650.00㎡(지하) × 1,050,909원/㎡ ^{주3}) = 14,073,458,031원 : ㉡ = 35,000,000원 ^{주6} • 산모건강증진센터 환산부지 : 379.45㎡ =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설계·감리비 포함) = (2,500.00㎡(지상) × 4,418,181원/㎡ ^{주5}) + (1,500.00㎡(지하) × 1,050,909원/㎡ ^{주3}) + 설계비(528,669,674원) + 감리비(130,274,146원) = 13,280,762,001원 ^{주7} : ㉡ = 35,000,000원 ^{주6}					

구분

공공시설
제공면적

건축물

주1) 지속가능한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25.02.28.) 조성단가(1,000,000원/㎡)의 면세

주2)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26.03.01.)(지상: 2,291,000원/㎡)의 면세

주3)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26.03.01.)(지하: 1,156,000원/㎡)의 면세

주4) 「수도권정비계획법」 표준건축비(2026)(지상: 2,392,000원/㎡)의 면세

주5)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산모건강증진센터: 4,860,000원/㎡)의 면세

주6) 토지주가 제시한 평가금액

주7)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상 설계비와 감리비 기준 적용하여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

기준 용적률

• 230%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230% + 120% = 350%

- 필수이행 (20% 이상 의무달성)

※ 필수 이행항목 중 이행하지 않은 항목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에 적용 가능

구분	인센티브		비 고
필수 이행	우수디자인	15%	우수디자인
	방재안전	5%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기준: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소 계	20%	20% 적용

- 계획유도 (허용용적률 120% 완화)

구분	인센티브		비 고
의무 이행	지능형 건축물인증	7.2%	2등급
	공공보행통로	4.22%	$230\% \times (310.70\text{㎡} / 16,917.00\text{㎡}) \times 1 = 4.22\%$
계획 유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12%	4등급
	제환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5%	사용량의 용적비율 25% 이상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10%	원정 규정 충족시
	친환경자동차	6%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의무량의 20% 초과설치 및 개방
	자연지반보존	4.95%	자연지반면적: 1,820.82㎡ 확보
	빗물이용시설 설치	9.2%	외부설치용량: 건축면적 × 0.05 계획용량: 500ton(495.05ton(의무))
	층간소음 해소	3%	바닥(중량)충격을 차단성능 2등급 적용
	무장애도시	6%	80점이상 적용(우수)
	단지내 소통공간 조성	10%	지상층 비주거시설 총량의 1/2: 2,844.6㎡ 이상 생활공유가로 배치면적: 5,689.2㎡
	공개공지 초과 조성	11.75%	공개공지(개방형, 필로티형) 설치
	전면공지 추가 조성	3.87%	전면공지 추가조성 570.62㎡ 설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외부개방	15%	주민공동시설 849.94㎡ 개방 (어린이집, 키즈카페)
	세대구분형(분리형) 주택	9%	총 세대수 30% 이상 세대구분형 주택 계획
	업무공간 확보	8.65%	지상 업무시설 설치
	소 계	125.84%	120% 적용

구분	산정내용			
개발가능 (상한)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가능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text{a토지} \cdot \text{지분} + 0.7 \sim 1.0 \times \text{a건축물} + 1.2 \times \text{a입체공원}]$			
	$\Rightarrow 350\% \times [1 + (1.3 \times 0.6571 \times 0.1179) + (1.3 \times 1.0 \times 0.2105) + (1.0 \times 0.0483) + (1.0 \times 0.0287) + (1.0 \times 0.0271) + (1.2 \times 0.00296)] = 518\%$			
	* 공공임대주택 및 전락육성용도시설 : 계수 1.0, 그 외 기타시설 : 계수 0.7 -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숙사, 공공지원시설(산모건강증진센터) 전락육성용도 계수 1.0 적용			
	• 정비계획 용적률 : 518%이하			
	<table><tr><td rowspan="2">가중치</td><td>• 도로(기반시설)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 \div 350\% = 0.6571$</td></tr><tr><td>• 공공시설(건축물)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350\% \div 350\% = 1.0$</td></tr></table>	가중치	• 도로(기반시설)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 \div 350\% = 0.6571$	• 공공시설(건축물)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350\% \div 350\% = 1.0$
	가중치		• 도로(기반시설)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 \div 350\% = 0.6571$	
		• 공공시설(건축물)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350\% \div 350\% = 1.0$		
	a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후 대지면적 = $1,648.0\text{m}^2 / 13,974.79\text{m}^2 = 0.1179$		
a지분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후 대지면적 = $(1,626.73 + 850.83 + 464.65)\text{m}^2 \div 13,974.79\text{m}^2 = 0.2105$			
a건축물 (계수 1.0)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후 대지면적 - 공공임대주택 = $674.99\text{m}^2 \div 13,974.79\text{m}^2 = 0.0483$ - 공공기숙사 = $402.09\text{m}^2 \div 13,974.79\text{m}^2 = 0.0287$ - 산모건강증진센터 = $379.45\text{m}^2 \div 13,974.79\text{m}^2 = 0.0271$			
a입체공원	• 공원 설치비용 환산부지면적(m^2) ÷ 공공시설 등 제공 후 대지면적 - 입체공원 = $41.41\text{m}^2 \div 13,974.79\text{m}^2 = 0.00296$			

사. 교통 및 동선 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 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 도로 확장 및 신설계획 수립																								
	④	- 중로1- 신설 : B=20.0m, 시범아파트 및 삼익아파트와 연계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	• 상위계획인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2023.12』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024.08』 개선안 반영																								
	-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준수																								
	-	- 사업지 주변 여의대방로, 국제금융로 도로계획안 반영																								
진출입 동선	-	- 성모병원 앞 교차로 개선안 반영																								
	-	•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성검토, 2024.02』 개선안 반영																								
	-	-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안) 및 사업지 주변 63로 도로계획안 반영																								
	-	• 장래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6개소)																								
	-																									
보행, 횡단 및 자전거	⑤	• 차량진출입구 설치(1개소)																								
	-	• 차량진출입구 각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																									
주 차 시 설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⑥	• 사업지내 공공보행통로 설치(B=3.2m)																								
	-	• 사업지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B=1.5m)																								
	-																									
	-	• 주차계획수립																								
교통안전 및 기타	⑦	<table><tr><th>구분</th><th>법정주차(대)</th><th>주차수요(2031년)(대)</th><th>계획주차(대)</th><th>법정대비</th><th>수요대비</th></tr><tr><td>주거시설</td><td>819</td><td>874</td><td>1,229</td><td>150.1%</td><td>140.6%</td></tr><tr><td>비주거시설</td><td>91</td><td>98</td><td>91</td><td>100.0%</td><td>92.9%</td></tr><tr><td>합계</td><td>910</td><td>972</td><td>1,320</td><td>145.1%</td><td>135.8%</td></tr></table>	구분	법정주차(대)	주차수요(2031년)(대)	계획주차(대)	법정대비	수요대비	주거시설	819	874	1,229	150.1%	140.6%	비주거시설	91	98	91	100.0%	92.9%	합계	910	972	1,320	145.1%	135.8%
	구분	법정주차(대)	주차수요(2031년)(대)	계획주차(대)	법정대비	수요대비																				
	주거시설	819	874	1,229	150.1%	140.6%																				
	비주거시설	91	98	91	100.0%	92.9%																				
	합계	910	972	1,320	145.1%	135.8%																				
-	※ 본 사업지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비주거시설의 계획주차대수는 법정최고한도 이내로 계획하였음																									
-	• 통학차량 정차공간 설치																									
-																										
-																										

주 ;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부지 내에서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도양 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남측 유치원 1개소 (침례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함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차.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현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4	4	—	4	4	—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360	360	266	94	696	514	182	—
단독주택	—	—	—	—	—	—	—	—
공동주택	360	360	266	94	696	514	182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

※ 구역 내 거주 인구수 : 역의도동 세대당인구수(1.93인/세대, 2025.06월 서울시 통계연보 기준) 적용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합계		360	—	—	—	360	360	—	—
60㎡ 이하	소계	—	—	—	—	—	—	—	—
	30㎡ 이하	—	—	—	—	—	—	—	—
	30~60㎡	—	—	—	—	—	—	—	—
60㎡~85㎡		—	—	—	—	—	—	—	—
85㎡ 초과	소계	360	—	—	—	360	360	—	—
	85㎡~135㎡	360	—	—	—	360	360	—	—
	135㎡ 초과	—	—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일반분양	공공임대주택	비고
합 계		672세대	571세대	101세대	—
60㎡ 이하	소 계	200세대	115세대	85세대	—
	30㎡ 이하	—	—	—	—
	30㎡ ~ 50㎡	—	—	—	—
	50㎡ ~ 60㎡	200세대	115세대	85세대	—
60㎡ ~ 85㎡		209세대	193세대	16세대	—
85㎡ 초과	소 계	263세대	263세대	—	—
	85㎡ ~ 135㎡	251세대	251세대	—	—
	135㎡ 초과	12세대	12세대	—	—

※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의 주택규모는 분양신청 단계에서 결정됨

타.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과.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대상지 내 주민 거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림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			비고
	명칭	면적(㎡)	명칭	위치	면적(㎡)	
기정	여의도 은하아파트 제건축정비구역	18,565.0	획지1	여의도동 52번지	18,56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여의도 은하아파트 제건축정비구역	18,565.0	획지1	여의도동 52번지	16,91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가.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공공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외관, 마감, 생활환경(채광, 조망) 등을 동일(유사)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되도록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조합원의 동·호수 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되도록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제공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신설	획지1	16,917.0	소계	101	-	-	8,648.74㎡
			전용 59㎡	85	59.98㎡	80.44㎡	6,837.79㎡
			전용 84㎡	16	84.98㎡	113.18㎡	1,810.96㎡

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비오름	비오름보전등급 향상	○	•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 도로 및 평가제외 지역	• 녹지공간의 확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대상지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및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영등포구)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하여 영향 최소화	—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	• 습지보호지역 1개소(영등포구)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동주택, 도로 및 입체공원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 계획 수립	—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 평균 표고 15.0m, 평균 경사도 5°미만의 평탄한 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대상지 내 녹지 계획	• 생태면적을 기준 29.05% 이상 수립	—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로 온도가 높은 편	•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중 식재	—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인근 유발시설이 없음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에너지	에너지절약/효율 극대화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추후 개발 예정 공동주택과 함께 자연경관 방면으로 점차 낮아지는 리드미컬한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 • 비슷한 규모의 개발계획으로 수직적 경관 형성 및 단지내 높이계획을 통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주상복합계획	•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해 공원 연결, 대상지내 공개공지 등 개설	—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승인한도 준수	—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상위계획 상 공공보행통로, 자전거도로 개설	•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 강화 및 자전거도로 설치	—

러.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정비구역 내 녹지 및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 재활용 가능한 수목·수형,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대상지 내 조경녹지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머.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현황 가구수 및 인구수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360	360	266	94	696	514	182	—
단독주택	—	—	—	—	—	—	—	—
공동주택	360	360	266	94	696	514	182	—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

※ 구역 내 거주 인구수 : 여의도동 세대당인구수(1.93인/세대, 2025.06월 서울시 통계연보 기준) 적용

■ 계획 가구수 및 인구수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계	360	696	672	1,297	—
60㎡ 이하	—	—	200	386	—
60㎡ ~ 85㎡	—	—	209	403	—
85㎡ 초과	360	696	263	508	—

※ 인구수 : 여의도동 세대당인구수(1.93인/세대, 2025.06월 서울시 통계연보 기준) 적용

버.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 해당없음

서.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추정 비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분양수입 추정액 - 총 사업비용 추정액) / 종전자산추정가액 총액 × 100%추정비례율 : 90.96% ⇒ (15,417.3억 - 6,454.3억) / 9,853억 × 100(%) = 90.96%<ul style="list-style-type: none">총 분양수입 추정액 : 1,541,729,399천원총 사업비용 추정액 : 645,432,425천원총 종전자산추정가액 : 985,359,0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단위 : 천 원)						
	구분		총 세대수	현금청산 세대수	비례율 산정용 세대수	세대당 종전자산추정가액 (타입별 평균)	총 종전자산 추정가액
	은하 아파트	36평	360	—	360	2,737,108	985,359,000
	합계		360	—	360	2,737,108	985,359,000
※ 현금청산 세대수는 없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따라 최종 확정됨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종전자산추정액과는 기준시점, 부동산 경기상황, 개별부동산 특성 등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음.							
추정 분담금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추정 권리가액 - (추정 종전자산가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84	23.86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90.96%)		-103,673 천원		
	102	27.96억			306,327 천원		
	138	36.12억			1,122,327 천원		
158	40.41억	1,551,327 천원					
(-) : 환급							
※ 59타입은 전체 일반분양으로 추정하였음.							
※ 상기 추정분담금은 이주비 이자 등 토지 등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 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599,781.60	—	599,781.60	서고2024-66 (2024.2.1.)	—

※ 기정 : 한양아파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영등포구고시 제2025-120호, 2025.07.03.) 및
 목화아파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영등포구고시 제2026-66호, 2026.05.07.) 반영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99,781.60	—	599,781.60	100.0	—
주거 지역	소계	496,918.80	감) 33,493.06	463,425.74	77.2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1,389.20	—	131,389.20	21.9	—
	제3종일반주거지역	249,694.60	감) 33,493.06	216,201.54	36.0	—
	준주거지역	115,835.00	—	115,835.00	19.3	—
상업 지역	소계	77,219.70	증) 33,493.06	110,712.76	18.5	—
	일반상업지역	77,219.70	증) 33,493.06	110,712.76	18.5	—
녹지 지역	소계	25,643.10	—	25,643.10	4.3	—
	자연녹지지역	25,643.10	—	25,643.10	4.3	—

※ 기정 : 한양아파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영등포구고시 제2025-120호, 2025.07.03.) 및
 목화아파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영등포구고시 제2026-66호, 2026.05.07.) 반영

※ 삼익아파트, 은하아파트 정비계획 결정(변경) 합산면적 반영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여의도동 51, 52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3,493.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 및 주변 아파트 정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하여 계획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여의도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337,378.7	—	337,378.7	건고131 (1976.8.21.)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11	12,258.8(139)	6	9,649.0(139)	1	59.8	4	2,550.0
대로	3	2,957.0	1	987.0	—	—	2	1,970.0
중로	5	8,918.0(139)	4	8,618.0(139)	—	—	1	300.0
소로	3	383.8	1	44.0	1	59.8	1	280.0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구도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30	35~38	주간선도로	987	여의동로	의사당대로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1	30	35~41	주간선도로	987	여의동로	의사당대로	일반도로	—	일부 확폭
기정	대로	3	100	25~27	주간선도로	590	국제금융로	여의동로	일반도로	건고143 (1970.3.26.)	—
기정	대로	3	31	25~45	주간선도로	1,380	여의도 남단	여의도 북단	일반도로	건고143 (1970.3.26.)	—
기정	중로	1	131	20~23	보조간선도로	1,195	여의동로	여의동로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32	20~30	보조간선도로	6,873	여의도 남단	여의도 북단	일반도로	—	특수도로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A	20	국지도로	278	여의도동 5	여의도동 4	일반도로	서고2024-146 (2024.3.21.)	—
기정	중로	1	—	20 (11.5)	보조간선도로	272 (139)	63로	여의대방로	일반도로	서고2025-80 (2025.2.13.)	—
변경	중로	1	—	20 (11.5)	보조간선도로	272 (139)	63로	여의대방로	일반도로	서고2025-80 (2025.2.13.)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	12	집산도로	300	여의나루길	여의길	일반도로	서고2006-21 (2006.1.12.)	—
기정	소로	1	—	10~14	특수도로	44	여의도동 50	여의도동 86-5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2025-80 (2025.2.13.)	도로,하천과 중복결정
기정	소로	2	—	8	특수도로	59.8	여의도동 3	여의도동 85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2026-11 (2026.1.2.)	도로,하천과 중복결정
기정	소로	3	—	9	국지도로	280	여의길	용호로	일반도로	서고2006-21 (2006.1.12.)	—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30	대로 1-30	• 도로 일부 확폭 - 폭원 : 35~38m → 35~41m	•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중로 1-) 진입을 위한 도로 일부 확폭
중로 1-	중로 1-	• 도로 선형 변경 - 가각부 개설	• 가각부 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나) 철도(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광장(변경없음)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여의도동 50 일원	17,502.3	—	17,502.3	서고2025-80 (2025.2.13.)	
기정	⑥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37 일대	1,760.0	—	1,760.0	서고2006-21 (2006.1.12.)	
기정	⑦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28 일대	2,155.0	—	2,155.0	서고2006-21 (2006.1.12.)	
기정	⑧	공원	소공원	여의도동 30-3 일대	940.0	—	940.0	서고2006-21 (2006.1.12.)	
기정	⑨	공원	소공원	여의도동 40 일대	680.0	—	680.0	서고2006-21 (2006.1.12.)	
기정	⑩	공원	소공원	여의도동 40-4 일대	470.0	—	470.0	서고2006-21 (2006.1.12.)	
폐지	⑤	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1,52 일대	1,860.0 (930.0)	감) 1,860.0 (930.0)	—	서고2006-21 (2006.1.12.)	
신설	⑫	공원	소공원	여의도동 51,52 일대	—	증) 3,000.0 (1,500.0)	3,000.0 (1,500.0)	—	임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소공원⑫(3,000㎡)은 삼익아파트 1,500㎡, 은하아파트 1,500㎡에 해당하는 면적임

※ 3,000㎡(1,500㎡)는 수평투영면적임

■ 임체적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⑫	소공원	여의도동 51, 52 일원	길이(㎞)	—	증) 85(42.5)	85(42.5)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임체적 결정도 참조
				폭(㎞)	—	증) 35(35.0)	35(35.0)		
				높이(㎞) (해수면기준)	—	증) E.L 11.0 이상	E.L 11.0 이상		
				수평투영면적(㎡)	—	증) 3,000(1,500)	3,000(1,500)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 임체공원은 원활한 식물 생육을 위해 토심을 최소 2m 이상, 토심과 별도로 방수·방근층을 조성해야 한다.

※ 구분지상권 설정은 지상부~지하부 2m 범위로 정하고 임체공원 사용권은 행정청(관리청)에 무상귀속되며, 도시계획시설(공원) 폐지 시 까지 구분지상권 유지한다.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1,860.0㎡ → - (감) 1,860.0㎡)	• 공원의 복합적 활용계획 및 공원 이용자 특성변화 등 주변 여건을 반영하여 어린이공원 폐지
⑫	소공원	• 소공원 임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길이 : 85m (42.5m) — 폭 : 35m (35m) — 높이(해수면기준) : E.L 11.0m 이상 — 수평투영면적 : 3,000㎡ (1,500㎡)	• 대상지의 입지 여건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소공원으로 결정하고, 공원의 복합적 활용계획을 위해 임체적 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변경없음)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다) 문화시설(변경없음)

라)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 시설	액티브 시니어 센터	여의도동 51	—	증) 2,296.5	2,296.5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 2,296.5㎡는 수평투영면적임

※ 삼익아파트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사회복지 시설	액티브 시니어 센터	여의도동 51	층	—	증)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2,296.5	2,296.5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은 영등포구로 귀속되며, 영등포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액티브시니어센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층 : 지하1층 ~ 지상5층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6,000㎡ 수평투영면적 : 2,2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어르신의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액티브시니어 센터 확충

4) 방재시설(변경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 변경없음

2) 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사항에 한함)

가 구		획 지					비 고
구분	번호	번호	위 치		대지면적(㎡)	획지면적(㎡)	
기정	C	C2	여의도동	51대	18,565.00	18,565.00	삼익아파트
변경					18,565.00	16,576.06	
기정	C	C3	여의도동	52대	18,565.00	18,565.00	은하아파트
변경					18,565.00	16,917.00	

4) 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나.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 건축물·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 구역1	1-1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12,973.7	—	12,973.7	목화아파트
		1-2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번지 일대	62,634.9	—	62,634.9	삼부아파트
기정	특별계획 구역2	2-1	영등포구 여의도동 40번지 일대	13,250.0	—	13,250.0	장미아파트
		2-2	영등포구 여의도동 40-4번지 일대	9,395.0	—	9,395.0	화랑아파트
		2-3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36,708.6	—	36,708.6	대교아파트
기정	특별계획구역3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일대	36,363.3	—	36,363.3	한양아파트
기정	특별계획구역4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109,307.8	—	109,307.8	시범아파트
기정	특별계획구역5		영등포구 여의도동 51번지 일대	18,565.0	—	18,565.0	삼익아파트
기정	특별계획구역6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일대	18,565.0	—	18,565.0	은하아파트
기정	특별계획구역7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 일대	43,042.0	—	43,042.0	광장아파트 28번지
기정	특별계획구역8		영등포구 여의도동 38-1번지 일대	10,167.0	—	10,167.0	광장아파트 38-1번지
기정	특별계획구역9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 일대	40,882.0	—	40,882.0	미성아파트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가) 공동개발 이행 시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1 : 특별계획구역 1-1, 1-2 공동개발(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2 : 특별계획구역 2-1, 2-2, 2-3 공동개발(변경없음)

나) 개별개발 이행 시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 1-1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1-2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2-1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2-2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2-3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3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4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5 (변경-결정고시 참고)
- 특별계획구역 6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은하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565.0㎡ 	-
용도지역·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그에 따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획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지 C3: 복합용지 	-
공공시설 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의무비율 25% 이상 토지 기부채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1,624.5㎡ 확보): 시범아파트 인접부도로 신설 (총 폭원20m 중 은하아파트 내 약 11.5m 확보: 1,624.5㎡) 공원: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원 조성(1,400㎡)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원 녹지계획은 주변 공원·녹지 현황과 보행 연결성, 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확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건축물 기부채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구체적 협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시설)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걸런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기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기결정된 도로 우선 설치 (지침도 참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C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 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권장 용도	획지 C3	전층	저층부(1~2층)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로활성화용도 :저층부(1~2층) 권장용도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불허 용도	획지 C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밀도 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및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정비사업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따름 ※ 비주거 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따름(관련규정 변경 시 변경된 규정을 따름)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표1 기준 적용)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국제금융로 연결부 : 6m - 63로 연결부 : 5m - 이면도로 및 공원 연결부 : 3m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이상 건축선 후퇴 • 벽면한계선 - 63로변 :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추가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이상 추가 후퇴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 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종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 간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15m 내외의 보차혼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침도에 따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통풍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풍축 확보를 위해 63로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국제금융로변으로 6m 건축선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기타 외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설치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
교통처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지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원 등 보행 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 	지침도에 따름
기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6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2번지	• 좌동
특별계획구역 면적	• 18,565.0㎡	• 좌동
용도지역·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 역으로 변경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등의 부지의 용도지역 은 기존 용도지역 유지 ※ 향후 용도지구(아파트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시 그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경미기반시설은 용도지역(제3종일반) 유지
획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 C3 : 복합용지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의무비율 25% 이상 • 토지 기부채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1,624.5㎡ 확보) : 시범아파트 인접부도로 신설 (총 폭원 20m 중 은하아파트 내 약 11.5m 확보 : 1,624.5㎡) - 공원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공원 조성(1,400 ㎡)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원 녹지계획은 주변 공원·녹지 현황과 보행 연결성, 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확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생활공유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시 공공기여로 인정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공공시설 제공(순부담)비율 : 32.8% • 토지 기부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1,648.0㎡)
공공시설 등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기부채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테크 지원센터,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금융지 원시설(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경제정책 실과 구체적 협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세부개발계 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전략육성 용도(시설) 의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수(건축물) 조정 검토) - 전략육성 용도(시설)이란 금융관련 업무·회의·전 시 등이 가능한 공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한강접근 시설 등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 강 화 및 한강중심의 매력적인 수변문화공간 조성 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을 말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가능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시설, 규모 결 정 ※ 경미기반시설 설치 시 지침도 상 경미기반시설 설치 위치에 우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기부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101세대) · 건축물 대지지분 : 1,626.73㎡ · 건축물 환산부지 : 674.99㎡ - 공공기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대지지분 : 850.83㎡ · 건축물 환산부지 : 402.09㎡ - 산모건강증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대지지분 : 464.65㎡ · 건축물 환산부지 : 379.45㎡

구분	시설명	위치	층	면적	비고(참고)
신규	공공 지원시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2	지상 1~3층	토지(지분) : 484.66㎡ 면적 : 4,000㎡	복합설치 (서울특별시)

※ 공공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 될
수 있음

※ 공공지원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임체공원 (수평투영면적 : 3,000㎡(1,500㎡))
- 건축물 환산부지 : 41.41㎡

구분			특별계획구역6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용도 계획	허용 용도	획지 C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14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 인정 시 국제금융중심지의 도심지원 기능 (업무시설 한정) 도입 가능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권장 용도	획지 C3	전층	저층부(1~2층)	전층	저층부(1~2층)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주택법 시행령」 제 7조 제14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인 정 시 국제금융중심 지의 도심지원 기능 (업무시설 한정) 도 입 가능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저층부(1~2층) 범위는 개별구역 특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정비계 획 등)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결정	• 좌동	• 좌동
불허 용도	획지 C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좌동		
밀도 계획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좌동	
		허용 용적률 인센 티브	외부 이행	우수디자인	15%	—
				방재안전	5%	—
				소계	20%	> 20% 적용
허용 용적률 인센 티브	계획 유도	지능형건축물	7.2%	—		
		광장보행중도	4.22%	—		
		제로에너지건축물	12%	—		
		생활용건축자재	5%	—		
		리모델링·유리한 공동주택	10%	—		
		친환경자동차	6%	—		
		자연기반보존	4.95%	—		
		빛물이용시설	9.2%	—		
		무장애도시	5%	—		
		단지내 소풍공간 조성	10%	—		
		공개공지 조차 조성	11.75%	—		
		친만공지 추가 조성	3.87%	—		
		부대복리시설 외부개방	15%	—		
		세대구분별주택	9%	—		
		업무공간 확보	8.65%	—		
중간소음 해소	3%	—				
소계	125.84%	> 120% 적용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600% 이하 권장		• 상한용적률 : 518% 이하		
높이		• 높이 200m 이하 －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성 등 고려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초과 허용 결정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3조 별 표1 기준 적용)		• 좌동		

구분		특별계획구역6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로 연결부 : 6m - 63로 연결부 : 5m - 이면도로 및 공원 연결부 : 3m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3m 이상 건축선 후퇴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로변: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벽면을 건축한 계선으로부터 3m추가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 단, 지구통경축변 일반건축물(주상복합 포함)은 11층 이상의 벽면을 3m 이상 추가 후퇴 	• 좌동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 8m 내외)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단지의 정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계획, 횡단보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종점 위치 조정 검토 • 생활공유가로(24시간 개방) :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소통 및 단지 간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15m 내외의 보차혼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에서 한강과의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3.2m) 조성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1.)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및 공공시설용지로 접한 부분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중심부는 고층부로 배치 -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지구통경축 확보를 위해 63로변으로 5m 건축선을 후퇴하고, 11층이상의 벽면을 3m 추가 후퇴 - 국제금융로변으로 6m 건축선 후퇴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의 1/3 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 	• 좌동

구분		특별계획구역6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기타 외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높이 1m 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물 등의 입면 디자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교통처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및 교차로 가각부 일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차량을 제외한 단지 내 비상 주차 가급적 지양 - 단지 내 보행 동선과 차량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원 등 보행 유발 시설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조성 - 보행로는 인접단지의 보행로와 연계성 고려 - 보행로 주변 조정시설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기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2 “특별계획구역 정의”를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적극 권장 • 인구 및 주택수용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별·동내·층별 혼합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맞춤형 주거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인구 및 주택계획의 적정성, 공공주택(임대)의 규모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 • 공원 및 공공시설용지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권장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통합기획(안) 우선 적용 •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특별계획구역 7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8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9 (변경없음)

바. 인센티브계획 결정(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변경없음

사.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V.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2026.03.19.)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 의 의 건	조 치 계 획
제4차 도시계획 위원회	○ 수정사항 - 용적률 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공공보행통로, 공공기여 계획 및 순부담 면적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획지면적, 용적률 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공공보행통로,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 면적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음
	○ 조건사항 - 공공보행통로 변 건축물은 통경축 확보를 고려하여 가능한 이격할 것	▶ 공공보행통로 변 통경축 20m→23m로 반영하여 단지 사이 개방감을 확보토록 하였음
	- 공원 유형은 대상지 및 공원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공원이 간선도로인 국제금융로(폭원 35m)변에 위치함에 따라 공원의 세분은 어린이공원→소공원으로 변경하였음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대상지 인접한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영등포구 치수과, 남부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와 협의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로 관리청과 지속 검토, 협의하겠음

V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여의도 아파트지구 용도지구 결정도
2. 여의도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기정,변경)
3. 여의도 아파트지구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여의도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정비구역 결정도
6.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변경)
7.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8. 정비계획종합결정도
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10.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변경)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12.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13. 건축계획(배치도)(예시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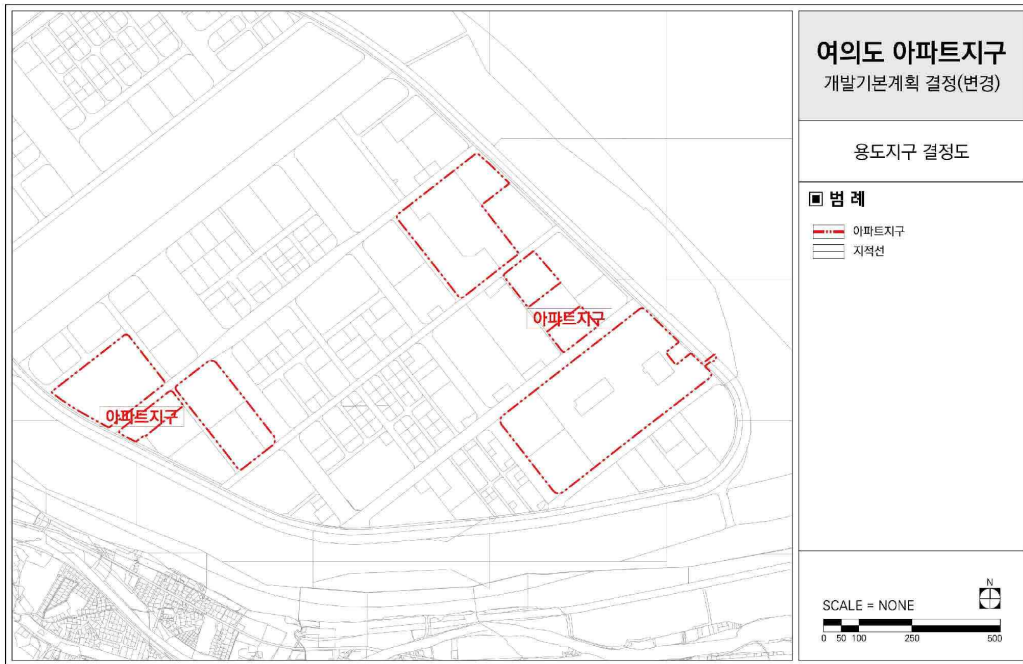
VII.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II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9), 영등포구
재건축사업과(☎02-2670-3572)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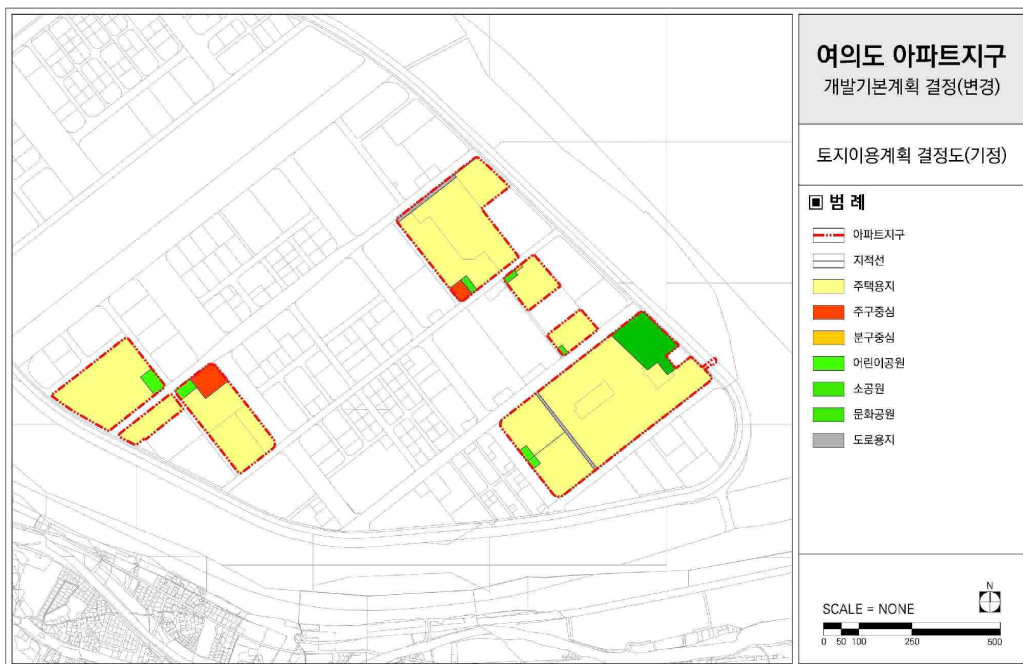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의도 아파트지구 용도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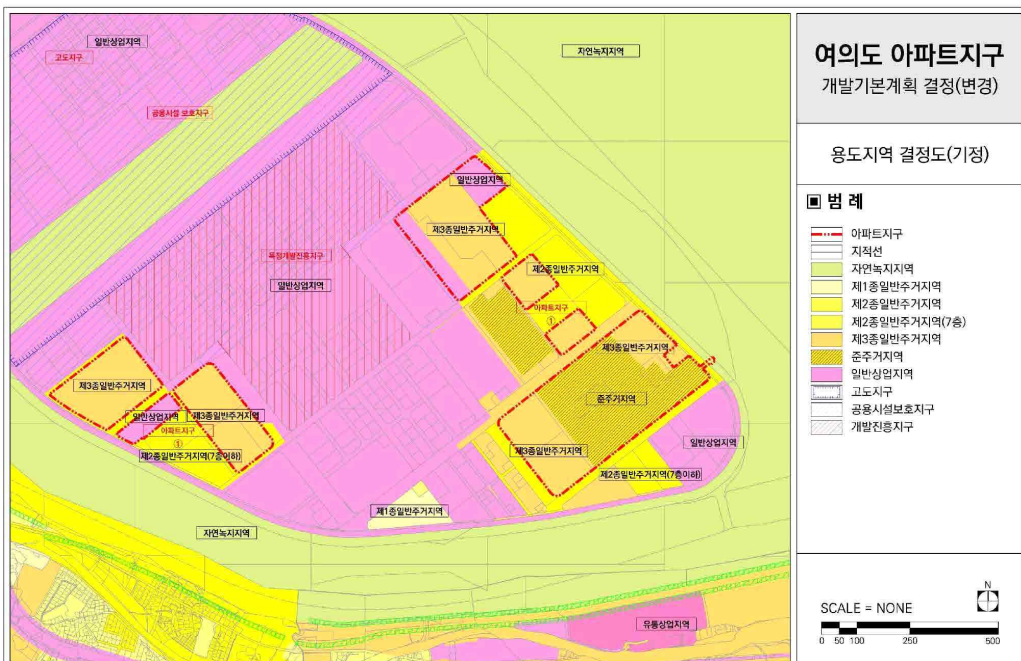
■ 여의도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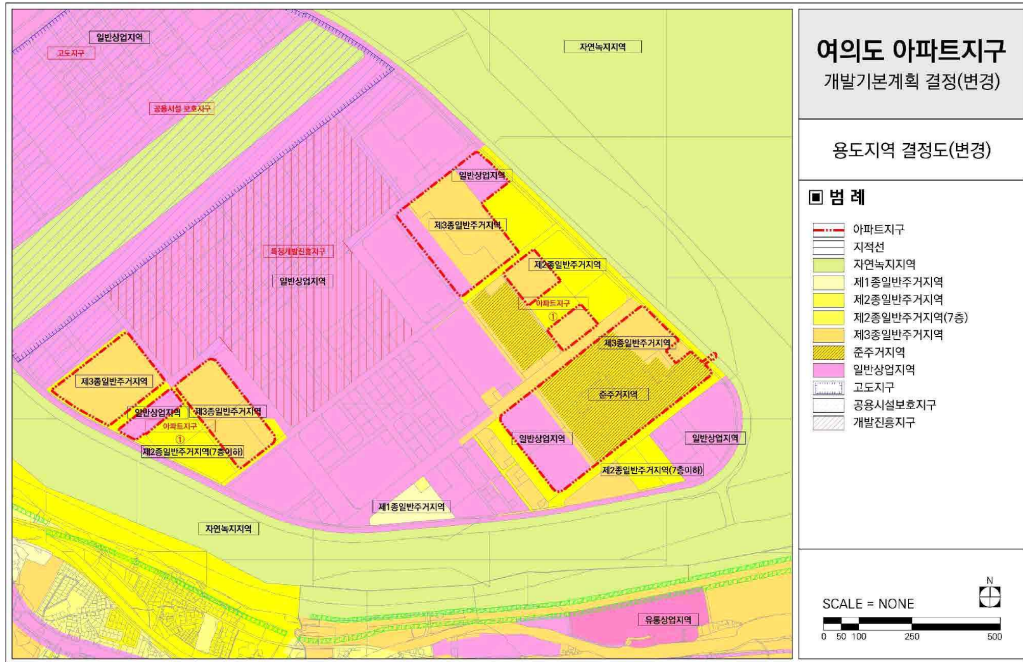
■ 여의도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



■ 여의도 아파트지구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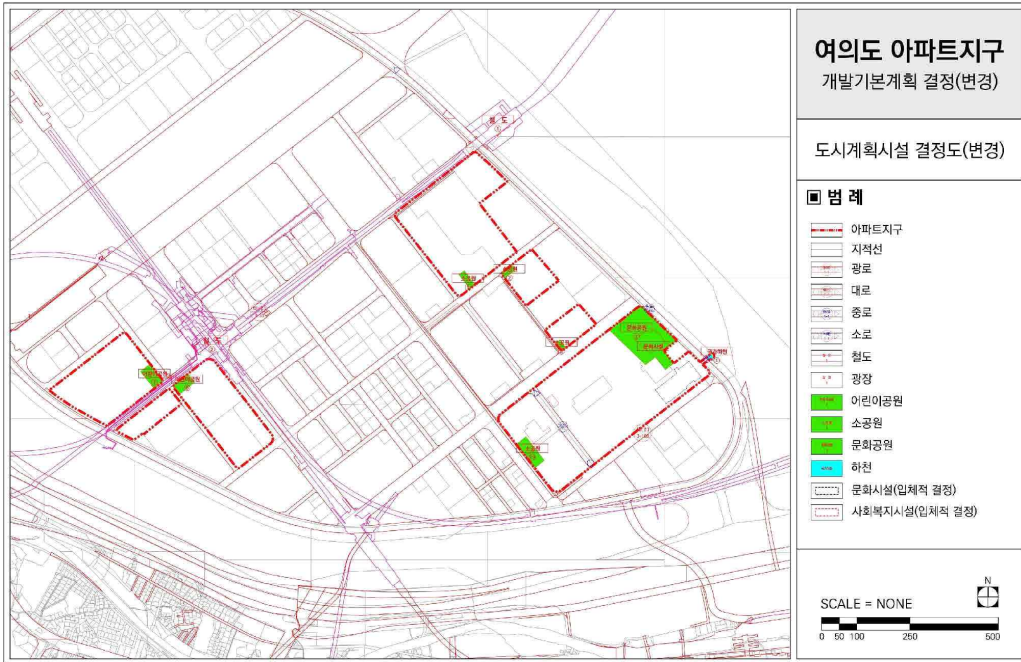
■ 여의도 아파트지구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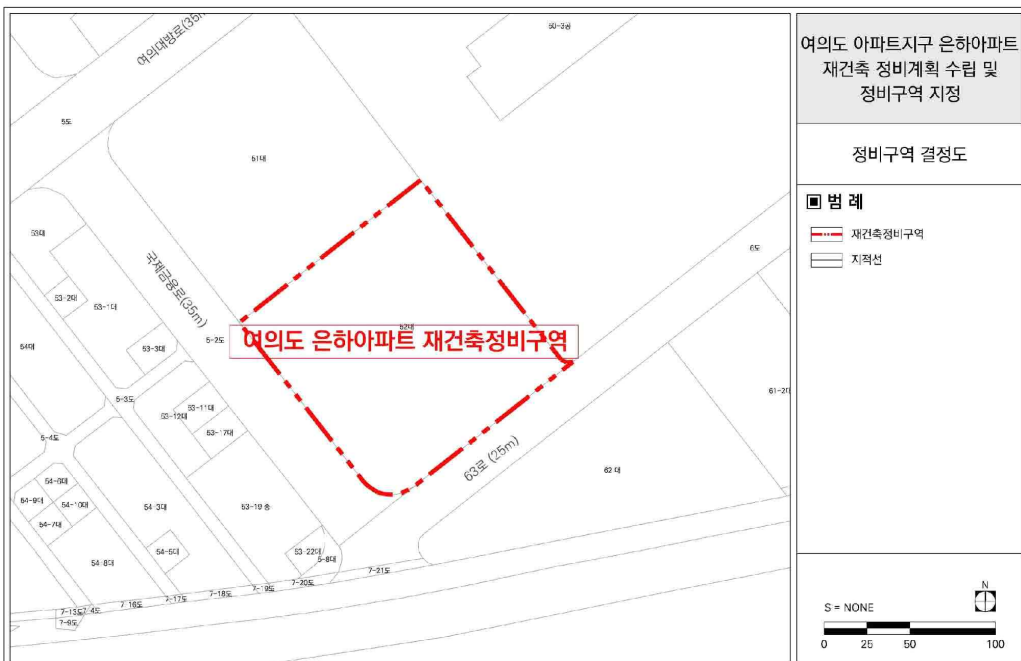
■ 여의도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여의도 아파트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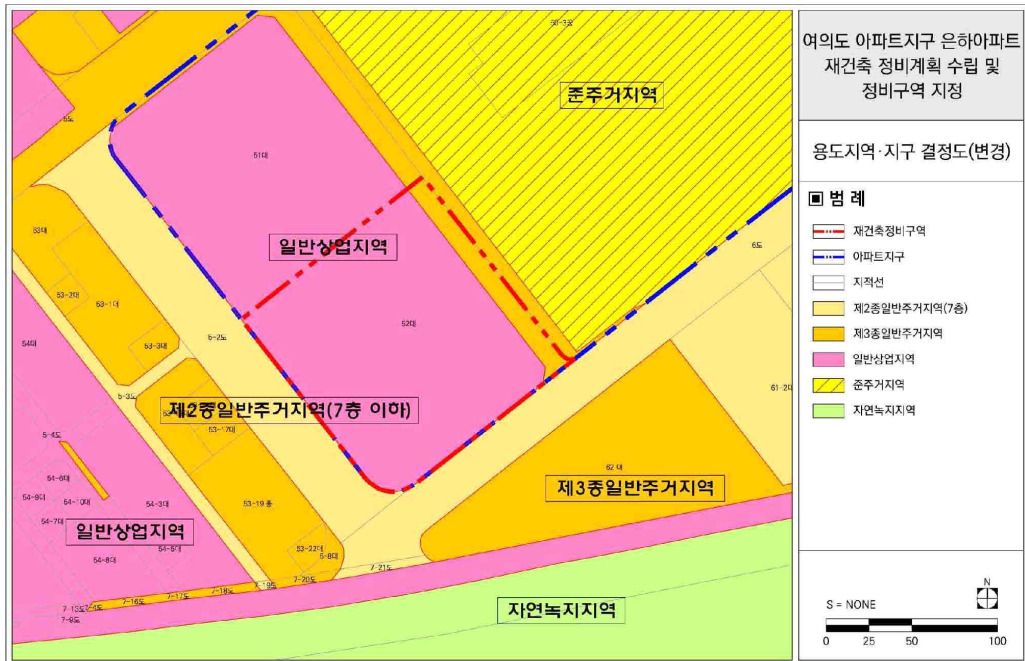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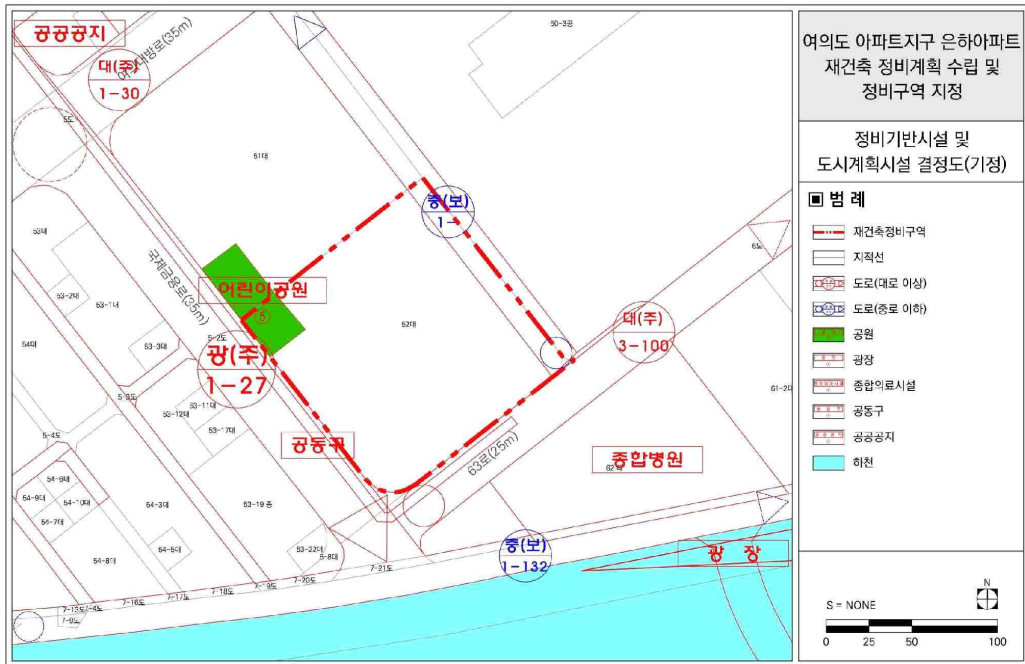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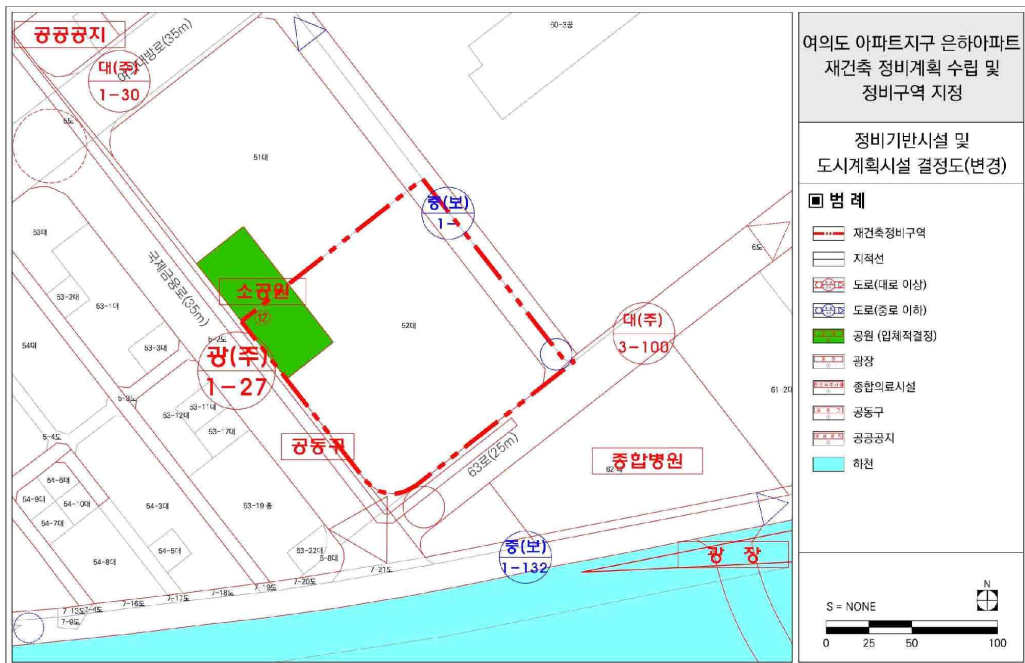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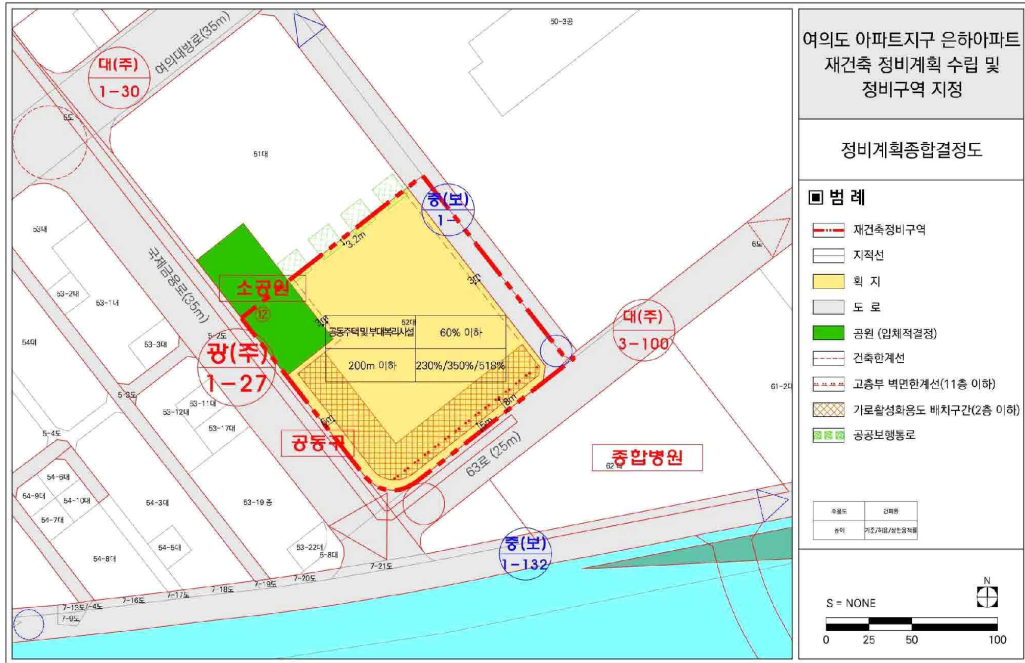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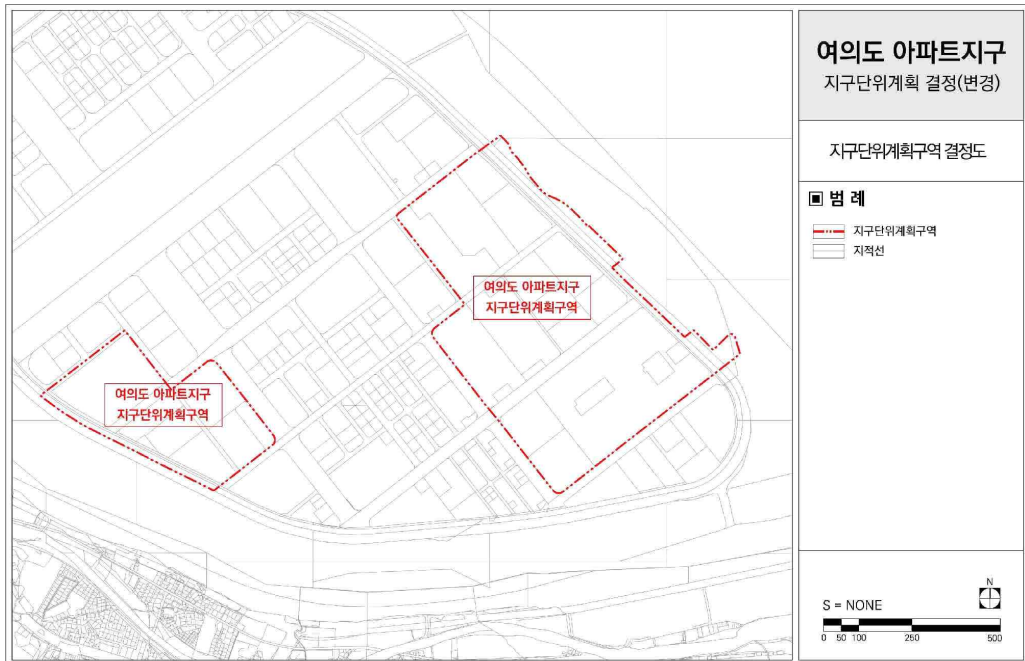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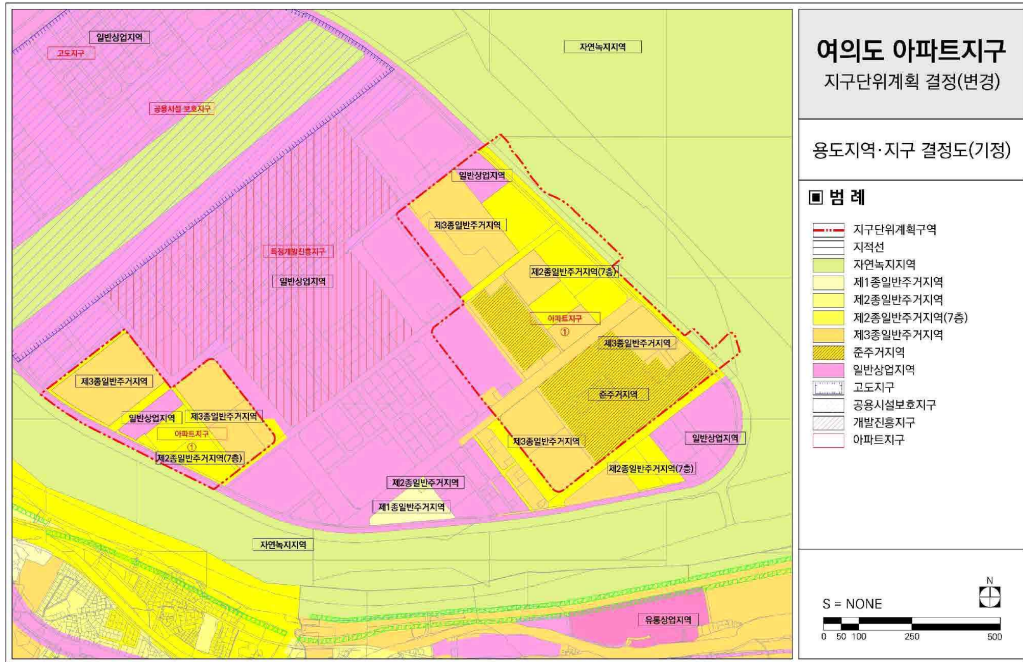
■ 정비계획종합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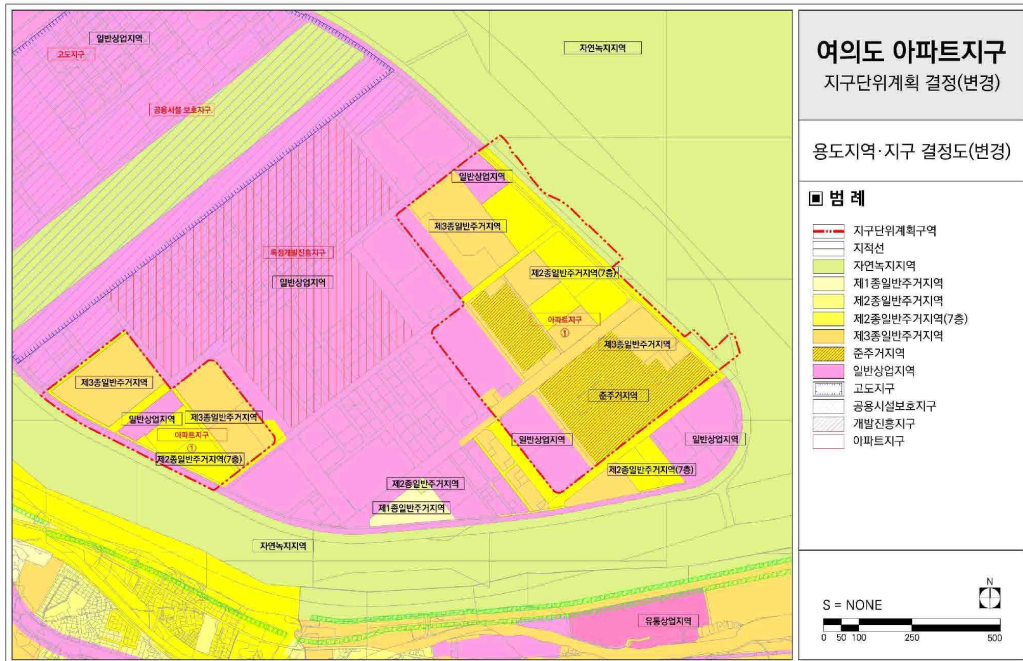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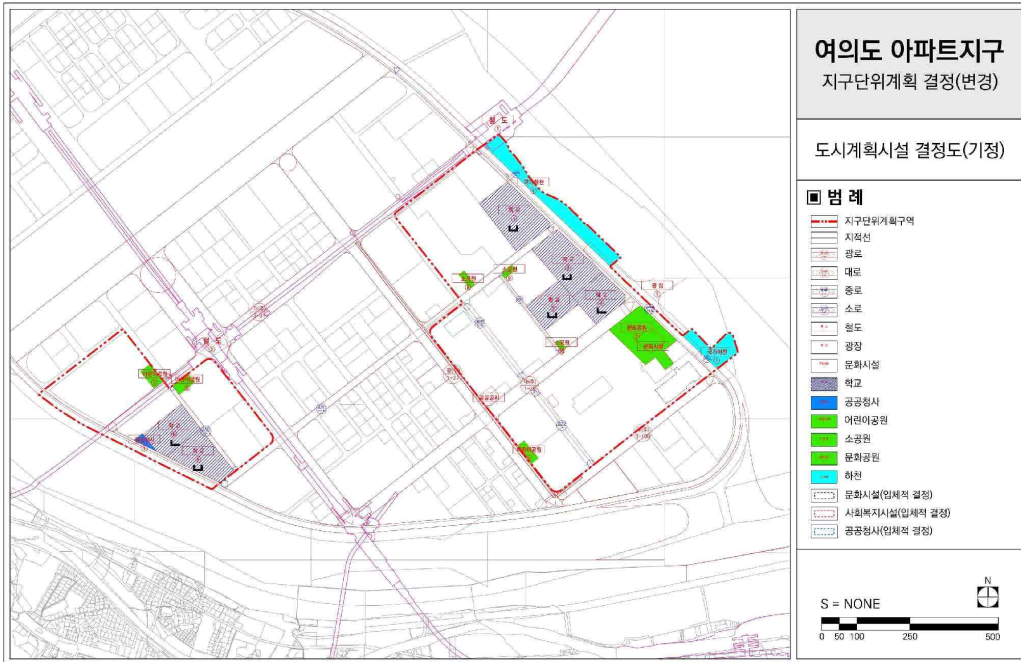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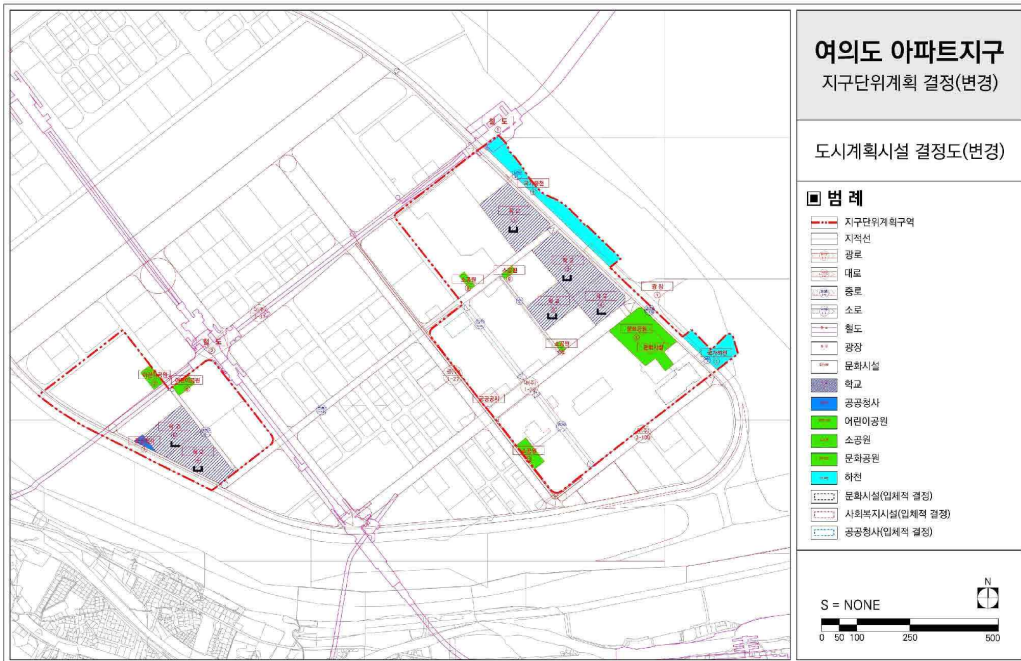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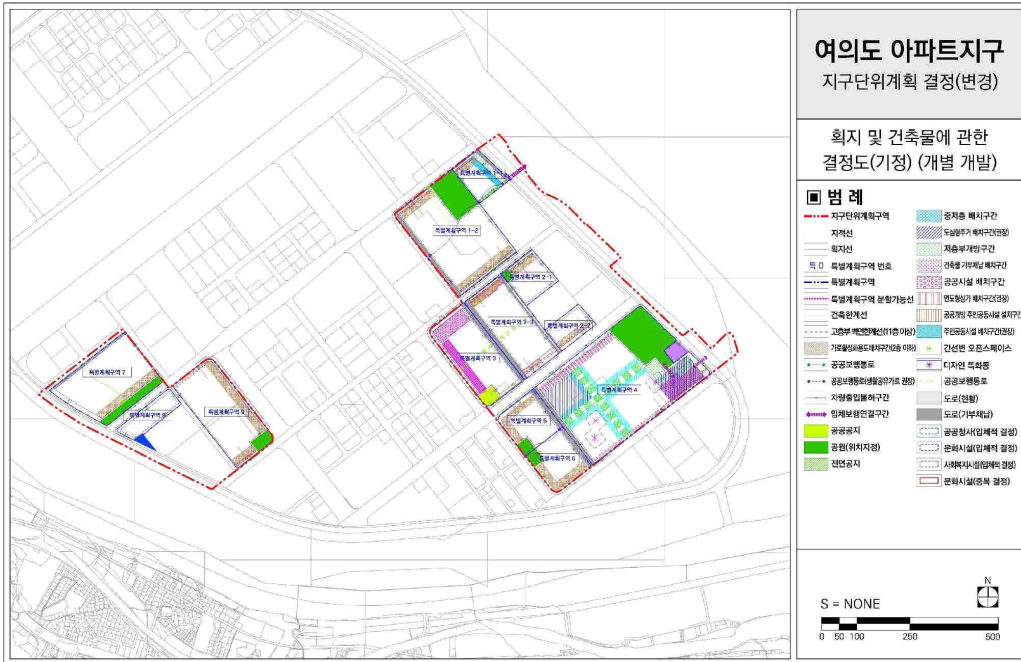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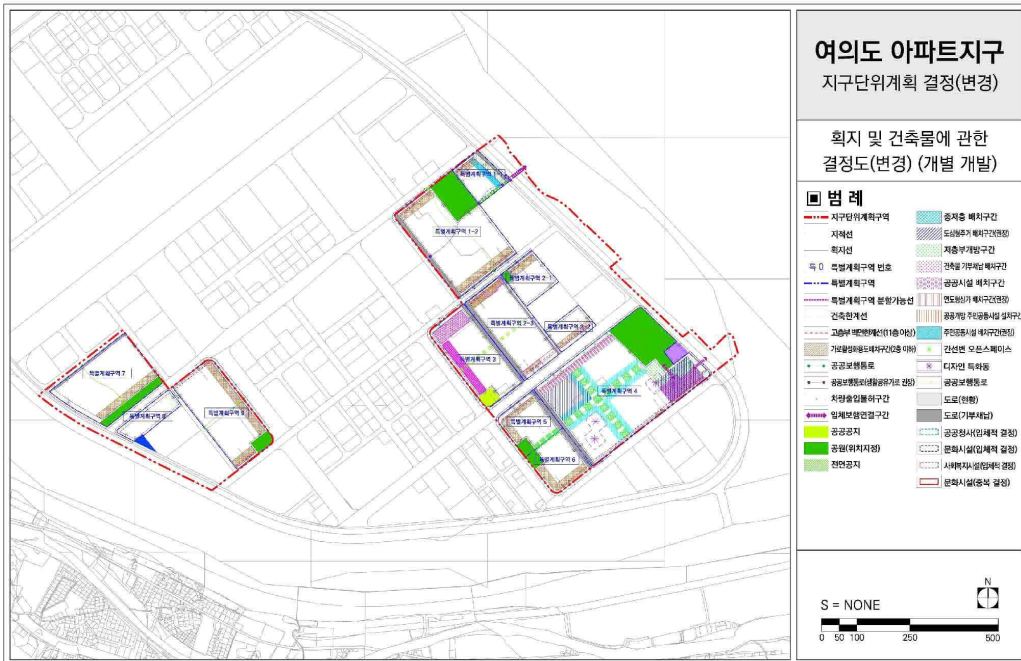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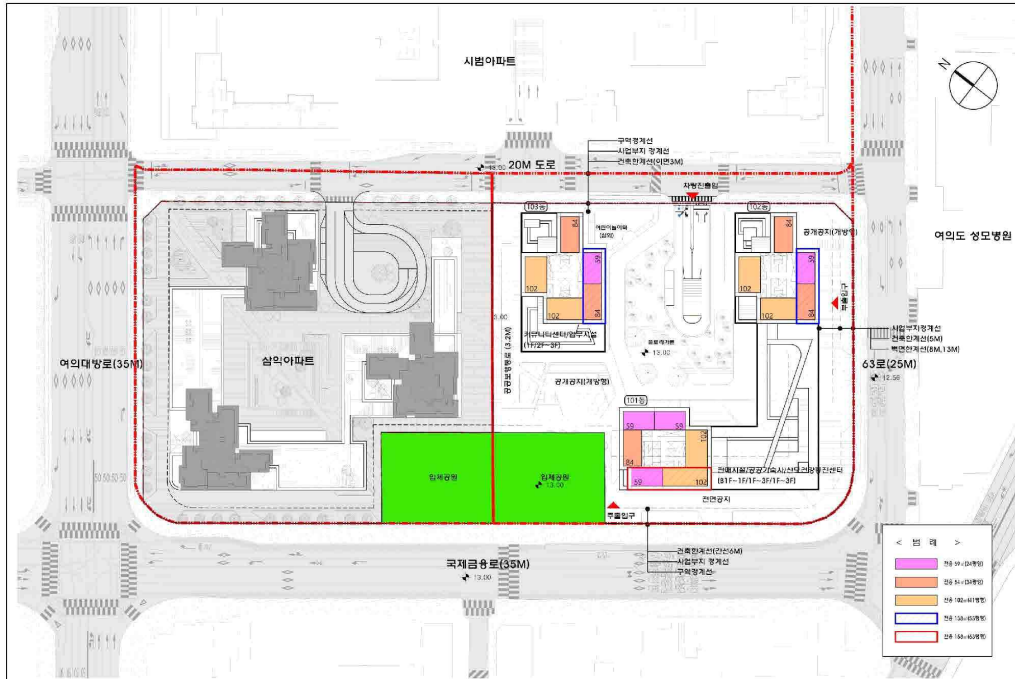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변경)



■ 건축계획(배치도) (예시도)



- 이 하 여 백 -